|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0호 《기업 정책성 이전 소득세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실시 하는바,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국가세무총국2012년 8월 10일**제1장 총 칙****제1조** 기업 정책성 이전소득세 징수관리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본 방법의 집행범위는 기업의 정책성 이전과정과 관련한 소득세 징수관리사항에 국한되며, 기업의 자가 이전 또는 상업성 이전 등 비정책성 이전의 세무처리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기업의 정책성 이전은 사회의 공공이익 수요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기업의 전체 이전 또는 일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업은 아래의 수요가 발생하고, 유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책성 이전에 속한다.(1) 국방 및 외교에 대한 수요(2)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시설에 대한 수요(3)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보호, 방재 및 감재, 문물보호, 사회복리, 시정(市政)공용 등 공공사업에 대한 수요(4) 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하는 보장성 주거공정 건설에 대한 수요(5)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성향(城乡)규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및 실시하는 붕괴위험 건물이 집중되어 있고, 기초시설이 낙후한 지역의 구시가지 개축에 대한 수요(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공이익에 대한 수요 **제4조** 기업은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정책성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수입, 이전지출, 이전자산 세무처리, 이전소득 등의 소득세 징수관리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세무관리와 결산을 해야 한다. 세무관리와 단독 결산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자가 이전 또는 상업성 이전 등 비정책성 이전으로 간주하며, 소득세 처리를 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이전수입****제5조** 기업의 이전수입은 이전과정에서 본 기업 이외(정부 또는 기타 단위 포함)단위로 부터 취득한 이전보상수입 및 본 기업의 이전자산 처분수입 등을 포함한다.**제6조** 기업이 취득한 이전보상수입은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취득한 화폐성 및 비화폐성 보상수입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수용된 자산가치에 대한 보상(2) 이전 또는 안치로 인해 제공받은 보상(3) 생산 및 영업중지로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제공받은 보상(4) 자산이전 과정에서 훼손되어 취득한 보험배상금(5) 기타 보상수입**제7조** 기업의 이전자산 처분수입은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기업의 각 유형의 자산을 처분하고 취득한 수입을 가리킨다. 기업 이전으로 인해 재고를 처분한 후 취득한 수입은 기업의 이전수입이 아니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취득한 수입으로서 소득세 처리를 해야 한다.**제3장 이전지출****제8조** 기업의 이전지출은 이전비용지출 및 이전으로 발생한 기업자산처분지출이 포함된다. **제9조** 이전비용지출은 기업의 이전기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가리키며, 직원안배로 실제 발생한 비용과 휴업기간에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복리비, 이전자산 임시보관으로 발생한 비용, 각종 자산의 이전설치비용, 기타 이전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제10조** 자산처분지출은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각 유형의 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지출을 가리키며, 각종 자산의 환금매각 및 처분의 순가액,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및 비용 등 지출이 포함된다.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폐기한 자산이 양도가치가 없는 경우, 순가액을 기업의 자산처분지출로 처리한다. **제4장 이전자산 세무처리****제11조** 기업이 이전하는 자산이 간단한 설치 또는 설치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산이 다시 사용을 시작한 후, 순가액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규정된 해당 자산의 미감가상각 또는 미상각 연한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계속하여 계상한다.**제12조** 기업이 이전하는 자산이 대규모 수리를 해야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순가액에 대규모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가산하여 해당 자산의 계세원가로 해야 한다. 해당 자산이 재사용을 시작한 후,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연한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계상한다.**제13조** 기업 이전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교환 방식을 취하는 경우, 교환구매토지의 계세원가는 피수용토지 순가액 및 해당 교환구매토지 사용시작 전에 발생한 각종 비용지출을 해당 교환구매토지 계세원가로 하고, 해당 교환구매토지가 사용을 개시한 후,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규정된 연한에 따라 상각한다.**제14조** 기업 이전기간에 신규 구입한 각종 자산은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의 계세원가 및 감가상각 또는 상각연한을 계산하여 확정해야 한다. 기업에 발생한 자산구입지출은 이전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5장 과세소득****제15조** 기업의 이전기간에 발생한 이전수입과 이전지출은 당기 소득세 과세표준에 잠정적으로 불산입하고, 이전을 완료한 연도에 이전수입과 지출을 총괄청산할 수 있다.**제16조** 기업의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기업의 이전소득이다. 기업은 이전을 완료한 연도에 이전소득을 당해연도 기업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이전을 완료한 연도로 간주하며, 기업은 이전청산을 실시하고, 이전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1) 이전을 시작하여, 5년 내(이전 당해연도 포함) 임의의 연도에 이전을 완료한 경우(2) 이전을 시작하여, 이전기간이 만 5년(이전 당해연도 포함)차 되는 연도 **제18조** 기업의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전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이전손실은 아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 (1) 이전을 완료한 연도에, 일회성 손실로 공제한다.(2) 이전을 완료한 연도부터 3년으로 나누어 균등 손금산입한다. 상술한 방법은 기업 스스로 선택한다. 단, 선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이와 동시에 기업이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1) 이전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성한 경우(2) 당해연도의 생산경영수입이 이전 계획 직전연도 생산경영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20조** 기업이 이전과 동시에 생산을 유지하는 경우, 이전연도는 실제 이전을 시작한 연도부터 계산해야 한다. **제21조** 기업의 이전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이전으로 인해 생산경영을 중지하여 소득이 없다면, 이전연도 다음해부터, 이전 완성연도 직전연도까지 기간을, 생산경영활동 중지연도로 간주하고, 법정결손금 이월공제연한에서 차감한다. 기업이 이전과 동시에 생산을 유지하는 경우, 결손금 이월연도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6장 징수관리****제22조** 기업은 이전 개시연도부터, 다음해 5월 31일 전까지, 주관세무기관 (전출지와 전입지 포함)에 정책성 이전근거 및 이전계획 등 유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미제출하는 경우, 특별사유 발생 및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책성 이전에 따라 처리하며, 본 방법의 규정을 집행할 수 없다. **제23조** 기업이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정책성 이전근거와 이전계획 등 유관 자료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1) 정부이전문건 또는 공고(2) 이전재매입총괄계획(3) 이전보상계약(4) 자산처분계획(5) 이전과 관련한 기타 사항**제24조** 기업 전출지와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청산을 책임진다. **제25조** 기업이 이전을 완료한 당해연도에,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기업 정책성 이전청산손익계산서》(서식 첨부) 및 유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제26조** 기업이 본 방법 발효전에 이전을 미완료하는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부합되는 이전사항은, 일률적으로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본 방법 발효연도 전, 이전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제27조** 본 방법에 미규정된 기업이전 세무사항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다.**제28조** 본 방법 시행 후 《기업 정책성 이전 또는 처분수입 유관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118호)는 폐지한다.첨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정책성 이전 청산손익계산서별첨서류：**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정책성 이전** **청산 손익계산서** 정책성 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세인명칭: 납세인식별번호: □□□□□□□□□□□□□□□ 금액단위: RMB(0.00 단위로 표시)

|  |  |  |  |
| --- | --- | --- | --- |
| 유형 | 행차 | 항목 | 금액 |
| 이전수입 | 1 | 수용된 자산가치에 대한 보상 |  |
| 2 | 이전 또는 안치로 인해 제공되는 보상 |  |
| 3 | 조업정지나 휴업으로 형성된 손실에 대한 보상 |  |
| 4 | 자산이전 과정에 훼손되어 취득한 보험배상금 |  |
| 5 | 이전자산처분수입 |  |
| 6 | 기타 이전수입 |  |
| 7 | 이전수입 합계(1+2+3+4+5+6) |  |
| 이전지출 | 8 | 직원 안치에 따른 실제발생비용 |  |
| 9 | 휴업기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복리비 |  |
| 10 | 이전자산 임시보관으로 발생한 비용 |  |
| 11 | 각종 자산 이전설치비용 |  |
| 12 | 자산처분지출 |  |
| 13 | 기타 이전지출 |  |
| 14 | 이전지출 합계(8+9+10+11+12+13) |  |
| 이전소득(또는 손실) | 15 | 이전소득(또는 손실)(7-14) |  |
| 납세인 날인:처리담당자 서명:신고일자: 년 월 일 | 대리신고중개기구 날인:처리담당자 서명 및 집업증명서 번호:대리신고일자:년 월 일 | 주관세무기관 수리전용인감수리인 서명:수리일자: 년 월 일 |
|   |  |  |  |  |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政策性搬迁所得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0号　　现将《企业政策性搬迁所得税管理办法》予以发布，自2012年10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二○一二年八月十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企业政策性搬迁的所得税征收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执行范围仅限于企业政策性搬迁过程中涉及的所得税征收管理事项，不包括企业自行搬迁或商业性搬迁等非政策性搬迁的税务处理事项。 　 **第三条** 企业政策性搬迁，是指由于社会公共利益的需要，在政府主导下企业进行整体搬迁或部分搬迁。企业由于下列需要之一，提供相关文件证明资料的，属于政策性搬迁： 　 （一）国防和外交的需要； 　 （二）由政府组织实施的能源、交通、水利等基础设施的需要； 　 （三）由政府组织实施的科技、教育、文化、卫生、体育、环境和资源保护、防灾减灾、文物保护、社会福利、市政公用等公共事业的需要； 　 （四）由政府组织实施的保障性安居工程建设的需要； 　（五）由政府依照《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有关规定组织实施的对危房集中、基础设施落后等地段进行旧城区改建的需要；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公共利益的需要。**第四条** 企业应按本办法的要求，就政策性搬迁过程中涉及的搬迁收入、搬迁支出、搬迁资产税务处理、搬迁所得等所得税征收管理事项，单独进行税务管理和核算。不能单独进行税务管理和核算的，应视为企业自行搬迁或商业性搬迁等非政策性搬迁进行所得税处理，不得执行本办法规定。**第二章 搬迁收入** 　 **第五条** 企业的搬迁收入，包括搬迁过程中从本企业以外（包括政府或其他单位）取得的搬迁补偿收入，以及本企业搬迁资产处置收入等。 　 **第六条** 企业取得的搬迁补偿收入，是指企业由于搬迁取得的货币性和非货币性补偿收入。具体包括： 　 （一）对被征用资产价值的补偿； 　 （二）因搬迁、安置而给予的补偿； 　 （三）对停产停业形成的损失而给予的补偿； 　 （四）资产搬迁过程中遭到毁损而取得的保险赔款； 　 （五）其他补偿收入。 　 **第七条** 企业搬迁资产处置收入，是指企业由于搬迁而处置企业各类资产所取得的收入。企业由于搬迁处置存货而取得的收入，应按正常经营活动取得的收入进行所得税处理，不作为企业搬迁收入。**第三章 搬迁支出**　　**第八条** 企业的搬迁支出，包括搬迁费用支出以及由于搬迁所发生的企业资产处置支出。　　**第九条** 搬迁费用支出，是指企业搬迁期间所发生的各项费用，包括安置职工实际发生的费用、停工期间支付给职工的工资及福利费、临时存放搬迁资产而发生的费用、各类资产搬迁安装费用以及其他与搬迁相关的费用。 　 **第十条** 资产处置支出，是指企业由于搬迁而处置各类资产所发生的支出，包括变卖及处置各类资产的净值、处置过程中所发生的税费等支出。 　 企业由于搬迁而报废的资产，如无转让价值，其净值作为企业的资产处置支出。 　　**第四章 搬迁资产税务处理** 　 **第十一条** 企业搬迁的资产，简单安装或不需要安装即可继续使用的，在该项资产重新投入使用后，就其净值按《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规定的该资产尚未折旧或摊销的年限，继续计提折旧或摊销。 　 **第十二条** 企业搬迁的资产，需要进行大修理后才能重新使用的，应就该资产的净值，加上大修理过程所发生的支出，为该资产的计税成本。在该项资产重新投入使用后，按该资产尚可使用的年限，计提折旧或摊销。 　 **第十三条** 企业搬迁中被征用的土地，采取土地置换的，换入土地的计税成本按被征用土地的净值，以及该换入土地投入使用前所发生的各项费用支出，为该换入土地的计税成本，在该换入土地投入使用后，按《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规定年限摊销。 　 **第十四条** 企业搬迁期间新购置的各类资产，应按《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等有关规定，计算确定资产的计税成本及折旧或摊销年限。企业发生的购置资产支出，不得从搬迁收入中扣除。 　　**第五章 应税所得** 　 **第十五条** 企业在搬迁期间发生的搬迁收入和搬迁支出，可以暂不计入当期应纳税所得额，而在完成搬迁的年度，对搬迁收入和支出进行汇总清算。 　 **第十六条** 企业的搬迁收入，扣除搬迁支出后的余额，为企业的搬迁所得。企业应在搬迁完成年度，将搬迁所得计入当年度企业应纳税所得额计算纳税。 　**第十七条** 下列情形之一的，为搬迁完成年度，企业应进行搬迁清算，计算搬迁所得：（一）从搬迁开始，5年内（包括搬迁当年度）任何一年完成搬迁的。 　 （二）从搬迁开始，搬迁时间满5年（包括搬迁当年度）的年度。 　 **第十八条** 企业搬迁收入扣除搬迁支出后为负数的，应为搬迁损失。搬迁损失可在下列方法中选择其一进行税务处理： 　 （一）在搬迁完成年度，一次性作为损失进行扣除。 　 （二）自搬迁完成年度起分3个年度，均匀在税前扣除。 　 上述方法由企业自行选择，但一经选定，不得改变。 　 **第十九条** 企业同时符合下列条件的，视为已经完成搬迁： 　 （一）搬迁规划已基本完成； 　 （二）当年生产经营收入占规划搬迁前年度生产经营收入50%以上。 　 **第二十条** 企业边搬迁、边生产的，搬迁年度应从实际开始搬迁的年度计算。**第二十一条** 企业以前年度发生尚未弥补的亏损的，凡企业由于搬迁停止生产经营无所得的，从搬迁年度次年起，至搬迁完成年度前一年度止，可作为停止生产经营活动年度，从法定亏损结转弥补年限中减除；企业边搬迁、边生产的，其亏损结转年度应连续计算。**第六章 征收管理** 　 **第二十二条** 企业应当自搬迁开始年度，至次年5月31日前，向主管税务机关（包括迁出地和迁入地）报送政策性搬迁依据、搬迁规划等相关材料。逾期未报的，除特殊原因并经主管税务机关认可外，按非政策性搬迁处理，不得执行本办法的规定。 　 **第二十三条** 企业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的政策性搬迁依据、搬迁规划等相关材料，包括： 　 （一）政府搬迁文件或公告； 　 （二）搬迁重置总体规划； 　 （三）拆迁补偿协议； 　 （四）资产处置计划； 　 （五）其他与搬迁相关的事项。 　 **第二十四条** 企业迁出地和迁入地主管税务机关发生变化的，由迁入地主管税务机关负责企业搬迁清算。 　 **第二十五条** 企业搬迁完成当年，其向主管税务机关报送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时，应同时报送《企业政策性搬迁清算损益表》（表样附后）及相关材料。 　 **第二十六条** 企业在本办法生效前尚未完成搬迁的，符合本办法规定的搬迁事项，一律按本办法执行。本办法生效年度以前已经完成搬迁且已按原规定进行税务处理的，不再调整。　　**第二十七条** 本办法未规定的企业搬迁税务事项，按照《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等相关规定进行税务处理。　　**第二十八条** 本办法施行后，《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政策性搬迁或处置收入有关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9]118号)同时废止。 　　附件：中华人民共和国企业政策性搬迁清算损益表.doc附件**中华人民共和国企业政策性搬迁清算****损益表**政策性搬迁期间： 年 月 日至 年 月 日纳税人名称：纳税人识别号：□□□□□□□□□□□□□□□ 金额单位： 元（列至角分）

|  |  |  |  |
| --- | --- | --- | --- |
| **类别** | **行次** | **项目** | **金额** |
| 搬迁收入 | 1 | 对被征用资产价值的补偿 |  |
| 2 | 因搬迁、安置而给予的补偿 |  |
| 3 | 对停产停业形成的损失而给予的补偿 |  |
| 4 | 资产搬迁过程中遭到毁损而取得的保险赔款 |  |
| 5 | 搬迁资产处置收入 |  |
| 6 | 其他搬迁收入 |  |
| 7 | 搬迁收入合计（1+2+3+4+5+6） |  |
| 搬迁支出 | 8 | 安置职工实际发生的费用 |  |
| 9 | 停工期间支付给职工的工资及福利费 |  |
| 10 | 临时存放搬迁资产而发生的费用 |  |
| 11 | 各类资产搬迁安装费用 |  |
| 12 | 资产处置支出 |  |
| 13 | 其他搬迁支出 |  |
| 14 | 搬迁支出合计（8+9+10+11+12+13） |  |
| 搬迁所得（或损失） | 15 | 搬迁所得（或损失）（7-14） |  |
| 纳税人盖章：经办人签字：申报日期：  年 月 日 | 代理申报中介机构盖章：经办人签字及执业证件号码：代理申报日期： 年 月 日 | 主管税务机关受理专用章：受理人签字：受理日期：  年 月 日 |

 |